

언어치료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별표6의 2에 근거하여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 재학생들이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관찰 및 언어재활실습 등의 실습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 언어치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언어장애인에게 언어장애의 선별, 평가, 진단,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역할)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책임자), 운영위원, 임상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은 센터 지원기구의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은 언어치료전공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020.2.25.개정)

④ 임상지도교수는 언어재활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 한다. 임상지도교수의 임기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학기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센터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활동을 한다.

1. 언어장애인들에게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
2.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 재학생들의 언어치료 실습실 제공
3. 기타 센터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사업

제4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내 보조금, 외부 지원금, 언어치료센터이용료, 기타 특별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루터대학교 교비 회계연도에 준하며 예산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규정 개정 등) ① 센터 규정 개정, 해산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